

 재정경제부	보도참고자료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풍요로운 나라 함께하는 선진경제 • 고품질 정책으로 신뢰받는 재경부
	보도일시	2007. 9. 19 (수) 조간부터	
생 산 일	2007. 9. 18 (화)	생산부서	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
담당과장	임재현(2150-9150)	담 당 자	이재면(2150-9151)

제 목: 「파트너십 과세제도(Partnership Taxation)」 도입 추진

우리부는 인적회사 성격*의 기업에 적합한 과세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지식기반서비스업 등의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, 기업과세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하여

* 대외적으로 사원이 기업의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부담하며, 대내적으로 사원들의 사적자치에 따라 경영활동이 이루어지는 특성

○ 금년 정기국회에서 「조세특례제한법」의 개정을 통하여 동업기업 과세특례(파트너십 과세제도)*를 도입하는 것을 추진중**에 있음 (시행시기 : 2009년 1월 1일)

* 동업기업(파트너십)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아니하고, 동업자(파트너)에게 배분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

** 현재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어 국무회의 상정을 추진중임

동업기업 과세특례는 조합이나 인적회사적 성격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함

○ 적용대상

- 「민법」·「상법」 및 기타 특별법에 따른 조합
- 「상법」 및 기타 특별법에 따른 합명회사·합자회사
- 인적용역을 주로 제공하는 유한회사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것 (예 : 회계법인, 세무법인, 법무법인(유한) 등)

○ 다만,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강제 적용할 경우 납세자에게 다소 복잡한 新제도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을 지우게 되고

- 기업의 사정에 따라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이 오히려 불리한 경우도 있음*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예정임

* (예) 사내유보율이 높고, 그 직원들이 고소득자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종전에 사내유보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율 25%(높은세율)로 한 번 과세되었으나, 동업기업 과세제도 선택시 동업자(개인)의 소득으로 즉시 귀속되어 소득세율 35%(최고세율)로 과세됨에 따라 오히려 세부담 증가

□ 동업기업 과세특례가 도입·시행되면,

- 합병·합자회사 등의 경우 이중과세문제가 완전히 조정됨에 따라 세부담이 경감되고
- 민법상 조합 등의 경우에는 법인이 동업자로 참여하는 조합에 대한 과세방법이 현재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나, 앞으로 동업기업을 하나의 실체로 보아 소득을 계산하고 신고할 수 있게 되어
 - 납세편의 및 과세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,
-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하고, 그 실질에 맞는 과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며
- 결손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동업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인 경우에는 그 결손금을 배분받아 동업자의 사업소득 등과 공제할 수도 있게 되어, 사업의 실질적 성과에 부합하는 과세가 가능해짐

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

〈첨부〉 동업기업 과세특례(파트너십 과세제도) 개요

- ① 조합이나 인적회사적 성격이 있는 법인에 대해 신청에 의해 적용
- 「민법」·「상법」 및 기타 특별법에 따른 조합
 - 「상법」 및 기타 특별법에 따른 합명회사·합자회사
 - 인적용역을 주로 제공하는 유한회사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것
(예 : 회계법인, 세무법인, 법무법인(유한) 등)
 - * 적용받으려는 과세연도 개시 이전까지 신청하는 기업에 한하여 적용
(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최소 5년간 계속 적용받을 의무 부여)
- ②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고, 동업자에 대해 배분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
- 동업기업을 하나의 실체(개인 또는 법인)로 보아 소득을 계산하되, 동업기업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,
 - 그 소득을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하여 소득세(개인 동업자) 또는 법인세(법인 동업자) 과세
 - 동업기업의 결손금 배분
 - 동업기업의 결손금을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각 동업자에게 지분가액을 한도로 배분
 - 지분가액 한도를 초과하는 결손금은 5년간 이월하여 매년 지분가액 한도내에서 이월배분 허용
- ③ 동업기업과 동업자간의 제3자 거래 인정
- 동업자가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*하는 경우 발생된 익금과 손금의 인식을 허용
 - * 동업기업의 경영성과와 관계없이 그 거래의 대가가 지급되는 거래
 - 다만,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*
 - * 예) 동업기업이 동업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한 경우 동업기업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와 양도가의 차액에 대해 과세

④ 지분의 양도시 양도소득 과세

- 동업자가 동업기업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**법인의 주식·출자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(=양도가액-지분가액) 과세**
 - 개인 동업자 : **법인의 주식·출자지분의 양도소득으로 과세**
 - * 단, 양도차손 발생시 당해 연도의 다른 동종의 주식·출자지분의 양도소득에서 공제 가능
 - 법인 동업자 : **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과세**
 - * 단, 양도차손 발생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 가능

⑤ 자산의 분배시 초과분배금에 대해 과세

-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실제로 분배받는 경우 **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분배받은 자산가액(시가)에 한하여 과세**
- **해산 등의 사유***로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**지분가액에 미달하여 분배받은 자산가액(시가)에 대해 손실 인정**
 - * 동업기업의 소멸, 동업자가 동업기업 지분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 등 동업자가 동업자로서의 지위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사유

⑥ 동업기업의 소득계산·배분명세 신고의무

- 동업기업은 **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** 소득계산·배분명세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

⑦ 비거주자·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

- 동업기업은 동업기업의 소득계산·배분명세를 신고하는 때 **비거주자·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부여**

<적용시기> '09.1.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